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 번 호	안 10846
-------------	------------

발의연월일 : 2017. 12. 15.

발의자 : 조응천 · 김경수 · 정춘숙  
            강훈식 · 위성곤 · 신창현  
            윤관석 · 원혜영 · 박정  
            김정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제4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노동운동 금지가 청원경찰에게 적용되어, 청원경찰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는 교원과 일부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근로자인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을 결정하였음(2017.9.28. 2015헌마653).

또한 일부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및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인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이에 청원경찰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제9조의4 및 제11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60조, 제66조제1항”을 “제60조”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쟁의 행위의 금지)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중 “청원경찰로서 제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한”을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 행위를 한”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 ③ (생략)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u>제60조, 제66조제1항</u>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제60조</u>-----          -----.</p> <p><u>제9조의4(쟁의행위의 금지) 청원 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11조(별 칙) 청원경찰로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1조(별 칙)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p>